

#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04.01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함)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목표의 달성과 대학의 교육과정의 혁신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교육과정혁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 총괄관리부서 부서장, 교육과정혁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스쿨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3조 (위원장 등)**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혁신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교과목의 학기변동 또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4조 (임기)**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보직 임면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 (심의)** 위원회는 우리대학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인증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

**제6조 (교육품질관리)**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소속 스쿨의 「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서」의 책임교수 역할을 수행한다.

**제7조 (회의소집)**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8조 (의결정족수)**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 (사무)**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과정혁신센터에서 담당한다.

**제10조 (준용)**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